



## 국제조사 [특허]

PCT 국제출원에 대해서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.

## 국제조사의 대상 [지재권일반]

국제조사는 모든 국제출원을 대상으로 행하여짐. 명세서 및 도면을 충분히 고려하고, 특히 청구범위에서 지향하는 발명사상에 유의하여 해석되어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함.

## 국제조사보고서 [특허]

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의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며,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송부됨.

## 국제조사문헌 [특허]

국제조사문헌은 국제특허 심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을 의미함. 본래 국제특허출원 심사 시 모든 선행하는 특허문헌을 조사토록 돼 있지만,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WIPO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특허 문헌의 범위를 선진 특허문헌으로 제한하고 있음.

## 국제조사기관 [특허]

특허협력동맹(PCT : Patent Cooperation Treaty)총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 간 기구 중에서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. 국제조사란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 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조사기관이 국제 출원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.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부터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. 국어로 된 출원은 우리나라 특허청, 영어로 된 출원은 우리나라 특허청 또는 오스트리아 특허청 또는 호주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.

## 국제조사기간 [특허]

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조약 제17조(2)(a)의 선언통지서의 작성기간은 국제조사기관이 조사용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게 만료하는 기간으로 함(PCT 규칙 제42조 42.1)

출처 특허청 홈페이지